

공급계약일반거래조건

1. 일반. "공급계약일반거래조건"이라 명명한 이 문서(이하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서"라 한다)는 KOKAM CO., LTD. 또는 그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특정 재화 및 용역(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에 관하여 특정 구매자(이하 "구매자"이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견적서(이하 "견적서"라 한다)에 첨부하여 견적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계약은 공급자가 계약제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데 적용하는 유일한 조건을 정의하며, 공급자가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계약제품의 구매에 관하여 작성하는 발주서(이하 "발주서"라 한다)에 명시한 기한과 조건은 공급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2. 발주서 및 수락. 구매자가 서면 또는 전자 전송을 통해 제출한 모든 발주서는 공급자가 서면으로 수락(이하 "수락"이라 한다)해야 효력을 지닌다. 다만, 발주서가 견적서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공급자가 해당 발주서를 수령함에 따라 발주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이 공급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하였다고 간주함에 따라, 본 계약에 명시한 조항은 공급자가 인정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나타내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공급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발행한 발주서는 공급자와 구매자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발주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구매가격 및 대금결제

3.1 구매가격 및 대금결제. 구매자는 견적서에 명시한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견적서에 명시한 계약제품에 대한 금액(이하 "구매가격"이라 한다)을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급자와 구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i) 구매한 계약제품에 대해 공급자가 발행하는 모든 청구서는 납품 이전에 사전 결제해야 하며, (ii)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대금은 견적서에 지정한 통화 단위로 전신 송금을 통해 청구서에 명시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3.2 세금 및 기타 수수료. 견적서에 달리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가격은 본 계약에 따른 계약제품의 구매, 선적 및 납품에 대한 모든 세금과 기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이 같은 세금과 기타 수수료는 구매가격에 추가하여 구매자가 결제해야 한다.

3.3 결제지연. 구매자가 결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모든 금액은 매월 1,000분의 15(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연이자 100분의 18(18%)) 또는 이 같은 이자율 보다 낮으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연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공급자는 미납 대금을 구매자가 모든 결제할 때까지 구매자가 주문한 계약제품이나 재화의 납품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급자에게 주어진 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다른 금액에서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4. 납품 및 선적.

4.1 납품. 납품은 구매자가 발주서에 서면으로 명시한 선적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급자는 계약제품의 일반적인 수급 현황에 따라 발주서를 수락할 때 선적지침을 수정할 수 있다. 공급자 또는 공급자에 재화를 납품하는 업체 또는 그 하청업체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파업, 직장폐쇄, 정부 지시를 포함한 불가항력 사건 등으로 공급자가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 등 공급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납품을 지연할 경우, 공급자는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한 기간 및 이후 적절한 기간을 추가한 기한까지 주문한 계약제품의 납품을 연장할 권한을 지닌다.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여 공급자가 예상 납품 기한 내에 계약제품을 납품할 수 없음이 자명할 경우, 공급자는 이 같은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지연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삼십(30)일 이후까지 납품 기한을 연장한다. 공급자는 조기 납품이나 지연 납품에 따른 비용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니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계약제품에 대한 공급자의 고객의 총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가 가장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부분 배송이나 배송 취소 등의 방법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계약제품의 물량을 배분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고객 중에서 계약을 먼저 체결한 순으로 납품을 진행할 수 있다. 구매자는 계약제품의 부분 납품 예정 또는 납품 취소에 관한 통보를 공급자에게 받은 날부터 삼(3)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부분 납품이나 납품 취소에 대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같은 주문 건에 대한 대금은 각 부분 납품이 이루어진 날부터 삼십(30)일 이내에 본 계약서에 명시한 결제 조건에 따라 결제해야 한다.

4.2 선적조건. 발주서에 달리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납품은 계약제품을 선적하는 공급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공장인도조건(Ex-Works, Incoterms 2010)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이나 목적지 인도조건(DDP/DAP Incoterms 2010)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이때 모든 운송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소유권과 멸실위험은 Ex-Works 조건일 경우 공급자의 창고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DDP/DAP 조건일 경우 지정 목적지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4.3 포장 및 선적. 구매자가 발주서에 특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공급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공급자의 통상적인 관행에 의거하여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모든 계약제품을 포장하고 선적한다. 별도 포장 및 선적 요청에 따라 공급자가 지불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독점적으로 부담한다.

4.4 멸실위험 및 소유권. 발주서에 달리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제품에 대한 멸실위험과 소유권은 납품장소에서 인도함에 따라 이전한다.

5. 검사와 인수. 공급자와 구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제품을 사용하거나 가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십오(15)일 이내에 구매자는 주문한 계약제품의 품질과 실제 납품한 계약제품의 품질의 불일치(이하 "하자"라 한다) 또는 주문한 계약제품의 수량과 실제 납품한 계약제품의 수량의 불일치를 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구매자가 앞서 언급한 기한 내에 공급자에게 이 같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구매자가 계약제품을 사용 또는 가공할 경우, 공급자가 하자 없이 계약제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고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구매자의 하자 청구권 일체에 대한 포기를 구성한다. 구매자가 앞서 언급한 기한 내에 주문한 계약제품과 실제 납품한 계약제품의 품질 또는 수량의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구매자는 이 같은 사안을 지체 없이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청구를 검증할 경우, 공급자는 추가 조치를 취하고 이 같은 불일치를 해소 하기 위한 지침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6. 지식재산권 및 사용. 구매자는 구매자가 계약제품의 물리적인 형태를 구매함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계약제품에 포함되고 계약제품에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이에 합의한다. 계약제품을 영업,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리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이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 받거나 소유하지 않으며, 나아가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계약제품을 수정, 역설계하거나 분해하지 않아야 한다. 구매자는 또한, 구매자가 계약제품을 다른 자재, 기계 또는 가공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통합한 결과로 발생하는 특허권, 등록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독자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합의한다. 구매자가 구매자가 자체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닌다.

7. 하자보증.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계약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제공한다. 이 같은 하자보증의 상세 내용은 공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한적 제품 보증"(Limited Product Warranty)이라 명명한 별도 문서에 확인할 수 있으며, 하자보증은 해당 문서의 내용에 따라 관장한다.

8. 면책. 제품 보증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품질, 상품성 및 합목적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계약제품의 사용이나 기능 또는 계약제품의 설계, 재료, 생산기량, 사용수명, 기능 및 적합성 또는 계약제품과 함께 제공하는 정보, 사양 및 설명서에 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계약제품의 취급, 보관 및 사용에 관하여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조언, 지원, 권고 및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니지 않는다.

9. 손해배상. 구매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한 바에 관한 청구에 따라 또는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송, 소송사유, 피해,

손해, 부상, 비용, 지출 및 책임 등 일체에 대하여 독자적인 책임을 지니며 공급자를 배상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i) 계약제품의 오용, 남용, 과실 또는 공급자가 명시한 바에 따라 계약제품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ii) 공급자가 수행하지 않거나 공급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제품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부속물을 추가하는 행위. (iii) 계약제품의 올바른 사용, 운송 및 폐기를 관장하는 안전 규정 및 설치 위치에 적용되는 다른 표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iv) 계약제품에 충분한 공기 순환을 제공하지 않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공급자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계약제품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행위. (v) 공급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계약제품을 개조 또는 분해 하는 행위. (vi) 공급자가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품목, 부품이나 자재와 조합하여 계약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10. 책임의 한계.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구매자가 실제로 입은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니며, 이 같은 책임은 해당 손해를 끼친 계약제품의 구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구매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청구와 책임으로부터 공급자와 공급자의 관계사를 면책한다. (A) 공급자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보 받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함에 상관 없이 상실이익, 상실수익, 미실현 수익 및 다른 모든 종류의 상업적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모든 특수, 간접 및 후속적인 피해. (B) 공급자의 과실여부와 상관 없이 불법행위로 또는 달리 발생하는 모든 책임, 계약제품을 다른 장치나 체계와 연결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의 손실(구매자의 사업재산을 포함한다), 인체의 부상이나 경제적 손실이나 피해. (C) 계약제품의 오용, 남용이나 잘못된 설치나 통합, 또는 공급자가 인가하지 않은 사람이 계약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부상. 공급자에게 일부 또는 전체의 책임을 집행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경우, 공급자가 지니는 책임의 최대 범위는 해당 청구가 제기된 모든 사유에 대한 공급자의 귀책의 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1. 해지. 구매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발주서도 해지할 수 없다. 공급자가 이 같은 해지에 동의할 경우, 구매자는 해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실제로 납품한 계약제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수행하는 가격 조정, 해당 발주서에 따라 발생한 모든 직접 및 간접 비용과 비례적 경비와 예상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a) 구매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공급자에 대해 지니는 다른 의무를 위반하고, 이 같은 위반을 해소할 수 있을 경우, 공급자가 위반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b) 구매자에 대하여 파산, 지불불능, 청산, 구조조정이나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구매자에 대해 파산이나 지불불능 선고가 있는 경우. (c) 구매자가 재산청산신청을 하거나 이를 제안하거나, 구매자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수탁자 또는 유사한 인력이 선임되는 경우. 앞서 열거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구매자에 대해 지니는 모든 후속적인 의무로부터 공급자를 면책하며, 이는 이 조항에 따라 해지가 효력을 지니는 날 종료되는 제품보증, 후속 관찰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2. 기타 조항

12.1 완전 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두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12.2 수정 및 권리포기.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수정, 보충, 동의 및 권리포기는 두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 한 효력을 지니지 않으며, 그 효력 또한 구체적인 경우와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적용한다.

12.3 가분성.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법원이나 중재인이 판단할 경우,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준법성 및 집행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2.4 양도. 구매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구매자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할당 할 수 없으며, 공급자는 공급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12.5 독립 계약자. 본 계약서의 두 당사자는 독립적인 지위로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한 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12.6 수출 법률. 공급자가 납품하는 계약제품은 이스라엘, 대한민국 및 미국 수출통제에 따라야 하며, 다른 국가의 무역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매자는 모든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하고, 필요에 따라 수출, 재수출 및 수입 인허가를 취득할 책임을 지님을 인지한다. 구매자는 이스라엘, 대한민국 및 미국 수출 규제 목록에 포함된 단체 또는 미국이 지정한 수출제외국가 또는 이란, 시리아, 레바논, 쿠바 및 북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 미국 수출 법률에 명시한 바에 따른 테러국가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12.7 불가항력. 공급자는 천재지변, 국내 또는 해외 정부기관의 조치, 생산방해 행위, 화재, 테러, 홍수, 지진, 폭발 등 기타 재난사고, 운항금지, 화물선 지연, 공급자의 공급업체에 기인한 지연, 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노동력 부족, 생산 중단 및 공급자의 통제를 벗어난 다른 모든 사건에 온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한 사유로 공급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2.8 통보. 모든 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견적서 및 발주서에 명시한 주소 또는 팩시밀리 번호로 발송 또는 전송해야 한다. 각 통보는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수령한 날부터 삼(3)일이 경과한 시점,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경우 수신을 확인함을 전제로 전송한 날부터 이(2)일이 경과한 시점 또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수령한 날부터 칠(7)일이 경과한 시점에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12.9 준거법.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이 경우 대한민국의 법률과 사법 관할권을 적용한다),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발주서는 영국법에 따라 구성되고 관장된다.

12.10 언어. 본 계약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만 작성하며, 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서와 교신은 국문 및 영어로 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12.11. 구매자는 계약제품 처분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을 지니며, 공급자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국가나 주 정부의 관계 법령과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인가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한다. 이 같은 법령과 규정은 사용수명 마감에 이르러 인가 폐기 장소로 계약제품 및 부품을 폐기하는 절차를 규정한 유럽연합 전기 전자 폐기물처리지침(WEEE Directive)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개정일: 2020년 3월

회사명 / 직인

위 내용을 승인하고 이에 합의함 - 구매자 서명

서명자 이름 및 직책

서명일